

【 건의요지 】

- 現 방위사업청 적격심사기준은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므로 중소기업 개발제품에 대한 쿼터제 등으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건의
- 귀 사의 건의사항은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청 적격심사 기준을 신규업체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이해합니다.
- 방위사업청은 군수품 조달에 있어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적격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, 군수품의 특성 상 품질보장과 계약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업체의 납품이행능력 평가 요소로 납품 실적에 대해 배점(10점)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
- 하지만, 납품실적의 경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납품실적 뿐만 아니라 유사물품 납품실적도 인정하고 있고, 실제 평가 시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를 0.95점 수준을 유지하여 실적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배점하고 있습니다.
* (조달청) 납품실적 평가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 : 최대 5점
- 한편, 적격심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 개발제품에 대한 쿼터제 도입은 제한되나,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, 신기술 인증 등을 받은 경우 업체 기술능력 평가에 반영(4점)하여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대해 실적업체와 신규업체 간 균형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·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< 문의처 :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-2079-6912 >

붙임자료

관련 규정

□ 「물품 적격심사 기준」

① 납품실적(10점)

(단위:점)

심사항목	평가요소	배점한도	등급	평점
① 최근 3년내 납품실적 (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)	금 액 [납품실적/ 예정가격]	10.00	A. 100% 이상	10.00
	수 량 [납품수량/ 입찰수량]		B. 50% 이상 - 100% 미만 C. 10% 이상 - 50% 미만 D. 1% 이상 - 10% 미만	9.85 9.70 9.55
② 최근 3년내 납품실적 (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)	금 액 [납품실적/ 예정가격]	9.50	A. 100% 이상 B. 50% 이상 - 100% 미만 C. 10% 이상 - 50% 미만 D. 10% 미만	9.50 9.35 9.20 9.05

② 기술능력(20점)

(단위 : 점)

심사항목	평가요소	배점한도	등급	평 점
③ 기술관리능력	기술관련 인증보유	4	A. 신제품 인증(NEP), 신기술 인증(NET),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(EPC), 중소벤처기업부장관(또는 위임 받은 자)에 의해 혁신형(벤처 또는 기술혁신형) 중소기업으로 선정(또는 지정)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	4.00
			B. 특허, GD인증	3.80
			C. 실용신안등록, 디자인등록	3.60
			D. 미보유	3.20